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4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이헌승·박덕흠·윤상현

김선교・서지영・박준태

백종헌 • 서일준 • 유용원

김도읍 · 김 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 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 고 있음.

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·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봉사동물에 대한 보호·관리)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·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·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의3(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·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 관리 지원 사업
 - 2. 퇴역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
 - 3. 그 밖에 사육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봉사동물에 대한 보호
	•관리)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
	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
	•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
	하여야 한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
	<u>사동물이 적정한 사육·관리를</u>
	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
	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
	<u>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6조의3(퇴역 봉사동물 지원센
	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
	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・관리
	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역 봉사
	동물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
	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
	사업을 수행한다.
	1.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・관리
	지원 사업
	2. 퇴역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
	료 지원 사업

- 3. 그 밖에 사육·관리에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
-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-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